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. 4. 26 선고 2017가단32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4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대 26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2, 23, 24, 25, 14, 17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49㎡ 지상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20, 21, 33, 34, 35, 36,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지상 담장을 각 철거하고, 위 각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)

판사강성우

별지